

慶北大學校生活協同組合定款

재정 2002. 1. 29.
개정 2003. 3. 29.
개정 2005. 2. 25.
개정 2007. 3. 29.
개정 2008. 2. 14.
개정 2009. 3. 17.
개정 2010. 3. 18.
개정 2011. 4. 21.
개정 2012. 4. 17.
개정 2013. 3. 8.
개정 2016. 4. 7.

제1장 총 칙 (제1조 ~ 제10조)
제2장 조합원 (제11조 ~ 제16조)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제17조 ~ 제23조)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4조 ~ 제42조)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3조 ~ 제54조)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5조 ~ 제57조)
제7장 회 계 (제58조 ~ 제62조)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3조 ~ 제66조)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한다)에 의하여 설립하며, 경북대학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향상과 대학구성원의 복지 및 생활문화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조합의 주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산격동)에 둔다.

②조합의 분사무소는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2559(가장동)에 둔다.

제4조(사업구역) 조합은 경북대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한다.

제5조(광고방법) ①조합의 광고는 조합 게시판 및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경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언론매체에 게재한다.

②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 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대학의 지원 등) ①조합은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조합발전을 위하여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대학의 허가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②조합은 국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대학의 검사, 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11조(조합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휴(직)학 중인 경우 조합원은 권리행사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복(직)학과 함께 자격이 유지된다.

1. 경북대학교 교원(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경북대학교 직원(계약직원 포함)
3. 경북대학교 학생(대학원생 포함)
4. 경북대학교생활협동조합 직원

제12조(조합원의 가입) ①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가입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 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탈퇴) ①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자

제15조(제명) ①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또는 경비등의 납입,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한 행위를 한 때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당해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조합은 제명 의결이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 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지분환급청구권) ①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 3 장 출자와 적립금

제17조(출자) ①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정부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 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 금액 또는 출자 좌수
6. 발행 연월일

②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 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스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도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출자좌수의 감소) ①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 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출자 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과태금) ①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 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법정적립금)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임의적립금)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 중 제2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배당을 완료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24조(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③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5조(대의원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둔다.

②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대의원 정수는 100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대의원 구성단위는 교원조합원, 직원조합원, 학생조합원으로 하며, 구성단위별 정수는 교원 25인, 직원 35인, 학생 40인으로 한다.

⑥대의원은 조합원 단위별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제45조에 따른다.

⑦결원이 발생한 경우 ⑥항에 의거하여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대의원 총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 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6조(정기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7조(임시총회) ①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가 소집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3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8조(총회의 소집절차) ①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 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8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총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 한도 결정
10. 기타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총회의 의사) ①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은 총회가 개의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에서는 제29조에 의해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31조(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4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대의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운영규정)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총회의 회기연장) ①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 집행을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과 상임 임원을 둘 수 있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 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이사회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사무국장의 임용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5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이사회 의사)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 개인 이익과 조합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해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0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1조(선거관리위원회) ①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서류비치의 의무) ①이사장은 정관, 규약, 규정과 총회,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 장 임원과 직원

제43조(임원의 정수)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18인 이내(교원 5인 이내, 직원 6인 이내, 학생 7인 이내)와 감사 2인(교원, 직원 각 1인)으로 한다.

제44조(임원의 선임 및 보선) ①조합의 임원은 당연직인 경북대학교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과 교원단위, 직원단위, 학생단위에서 선출된 자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과 상임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호선한다.

③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임기 중 궐위 시에는 각 단위별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당연직 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이사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당해 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8조(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이사장의 유고 시는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9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연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감사는 이사가 법령,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1조(임원의 책임 등) ①임원은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에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에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2조(임원의 실비변상 등) ①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임원은 이사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53조(임원의 해임) ①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총회의 의결로써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해임의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④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조합직원의 임용 등) ①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직원의 인사와 보수, 직원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사업과 집행

제55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6.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대학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6조(사업의 이용) ①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 등을 유·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7. 조합원이 아닌 학교의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시장에게 신고한 기간 동안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홍보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보고서, 잉여금 처리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포함한다)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1항의 서류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58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9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0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1조(손실금의 보전) ①조합은 전년도 이월 손실금이 있거나 회계 연도 말에 손실금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잔여 손실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조합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 의결로 자본금을 감소시킴으로써 각 조합원의 납입 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조합은 매 회계 연도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제23조의 법정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에게 배당하며, 잔여금 일부를 경북대학교에 기부하거나 학내 장학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손실금의 보전과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④잉여금 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3조(합병과 분할) ①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신설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4조(해산사유) ①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6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 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 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2. 1. 29.)

부 칙 (2003. 3. 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